

## 2025년도 임시 제8회~제10회 해기사 시험 시행 공고 변경

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 2025-147호

2025년도 임시 제8회~제10회 해기사 시험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2025년도 5월 29일  
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

### 1. 시행직종 및 등급, 시험방법

가. 회별 시행 직종 및 지역

구분	시험일	시행 등급 및 직종	인원(명)	입실시간
			동해	
8회	2025. 6. 11.(수)	4·5급 항해사(상선, 어선, 교류, 한정) 및 4·5급 기관사(한정 포함)	30	13:30
9회	2025. 6. 12.(목)	3·6급 항해사(상선, 어선, 교류)	30	09:30
		3·6급 기관사	30	13:30
10회	2025. 6. 13.(금)	소형선박조종사	30	09:30

※ 제8회 : 1부제(오후) 시행(동해 : 오후 30명)

※ 제9회 : 2부제(오전, 오후) 시행(동해 : 오전, 오후 30명씩)

※ 제10회 : 1부제(오전) 시행(동해 : 오전 30명)

※ 시험장소 등의 상황에 따라 취소 및 회별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

나. 시험장소

○ 동해 : 강원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104호(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)

※ 시험 시행지역 사정에 따라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

다. 시험방법 : CBT(Computer Based Test, 컴퓨터 시험)

○ PBT(OMR 답안 작성) 시행 시 시험일 전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지, SMS로 안내

### 2. 응시원서 접수

가. 회별 접수기간

구분	접수일	접수시간
8회	2025. 5. 28.(수) ~ 6. 2.(월)	☞ <b>접수 시작일 10:00부터 접수 마감일 18:00까지</b> ※ 정원제 운영으로 <b>접수기간 중 선착순 마감</b> , 정원이 마감된 경우 접수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접수 불가, 접수 기간 중 취소자 발생 시 추가 접수는 가능
9회		
10회		

나.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만 가능(정원 내 선착순 마감)

○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(정원 내 선착순 마감)

○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
➔ 원서 접수 ➔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➔ 해기사 ➔ 원서 접수

○ 응시원서 작성

- 인터넷접수는 응시자 정보 및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
-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시고, 한번 등록된 개인정보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.

- 단, 휴대폰 번호 등은 항상 최신화해야 시험 정보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1. 인터넷(모바일 등) 접수는 접수 요건의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며, 접수내용의 수정 및 정정이 제한되고 접수오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2. 필기시험 응시는 회별 1개 직종만 응시 가능합니다.
  -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면허발급 신청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한번만 제출
  - 단, **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**,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.
3. 교류시험 응시자는 원서 접수 시 직종을 "교류(상선)"로 선택하고, 시험의 형태는 과목면제로 선택하여 접수합니다.
4. 면허전환(통신사 → 항해사) 응시자는 원서 접수 시 해당직종 및 등급을 선택하고 시험의 형태는 과목면제(통신사면허를 받고 6년 이상 경력의 통신사) 또는 "해당없음"으로 선택하여 접수합니다.
  - ※ 모든 증빙서류는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 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합니다.

다. 응시 수수료

구분	금액
3~4급 (항해사·기관사)	14,000원
5~6급 (항해사·기관사)	13,000원
소형선박조종사	10,000원

3.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

구분	합격자 발표일시	결과 확인방법
8회	시험시행일 17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lems.seaman.or.kr">http://lems.seaman.or.kr</a>) 접속 → 접수 및 합격자 정보 → 합격정보 → 확인</li> <li>단문자(SMS) 발송 : 접수 시 등록한 휴대폰으로 응시자 전원에게 문자서비스 제공</li> </ul>
9회	시험시행일 17:00	
10회	시험시행일 17:00	

4.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 안내

가.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

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  
→ 원서접수(접수확인 및 취소) →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→ 접수 취소
-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.

나.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

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  
→ 원서접수(접수확인 및 취소) →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→ 접수 환불
  -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.
  -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.
- ※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1.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2.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였거나,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시간적 또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및 교통비 취소 수수료 등을 원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3.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: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
4.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
5.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
6.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
  - 6-1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(외)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  - 6-2.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)

- 6-3.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국가(공공기관)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)
- 6-4.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
- 6-5.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)

5. 결격사유

**[선박직원법 제6조]**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
2.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(「수산업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응시자 주의사항

가.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(일부과목 및 면접응시자 제외), 최종 시험합격 후 면허교부 신청 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- 나.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접수 완료 후 응시표에 표기되는 **응시직종, 응시지역, 시험형태,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**하고,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필기시험 응시자는 **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선원수첩,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**하여야 하며,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칙연산 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.
- 마. **응시자는 대기시간 및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스마트워치, 태블릿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]을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**
  - ☞ **시험 시작 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의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.**
- 바. 임시필기시험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사.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, 시험 시행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.
- 아. **면허발급 신청은 해기사시험 최종 합격 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**하여야 합니다.
- 자. 시험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7. 기타 참고사항

- 면제요건 등 사전 확인사항

- ▶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(2012.10.31)으로 **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, 응시원서만 제출**
- ▶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면허발급 신청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한번만 제출
- ▶ 단, **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**해야 함.
- ☞ **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.**
- ※ **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등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**

예시1)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 인정 여부

-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합정경력은 2011.02.14.이후부터 승무경력 인정

예시2) 교류시험 응시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 시험 접수 가능

- 어선 3급 면허 소지자 → 상선 3급 교류시험 응시

예시3) 통신사 경력자 → 항해사 시험 중 필기 과목면제(법규, 영어, 전문)

- 통신면허를 받고 6년 이상 통신사 경력 소지자

예시4) 승무경력기간 계산

### 선박직원법시행령 제7조(승무경력기간의 계산)

-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,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또는 능력평가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종합민원실 : 콜센터 ☎ 1899-3600, FAX 051-624-9081

(주소) 49111,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

- 능력평가팀 : ☎ 051-620-5831~6, FAX 051-626-7556